

#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7호
----------	--------

제출년월일 2024. 8.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2조)
- 나.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3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4조 ~ 제5조)
- 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안 제6조)
- 마.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나. 관계 법령 : 불임
- 다.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별첨)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6. 4. ~ 6. 24.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나) 경기도 : 노동안전과

##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제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5. 사업장 내 노동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운영
  -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이 회 숙
	팀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팀장 이 신 경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노 경 숙 (☎2275)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노동안전지킴이(4명)

- 인건비 : 126,355,000원
- 일반운영비 : 37,665,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64,020	172,200	180,800	189,800	199,300	906,120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	126,355	132,650	139,280	146,250	153,560	698,095
노동안전지킴이 일반운영비	37,665	39,550	41,520	43,550	45,740	208,025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과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과장 이회숙    팀장 이신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64,020	172,200	180,800	189,800	199,300	906,120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	126,355	132,650	139,280	146,250	153,560	698,095	
노동안전지킴이 일반운영비	37,665	39,550	41,520	43,550	45,740	208,025	
재원 조달	164,020	172,200	180,800	189,800	199,300	906,120	
의존 재원	소 계	49,211	51,660	54,240	56,940	59,790	271,841
	보조금	49,211	51,660	54,240	56,940	59,790	271,84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4,809	120,540	126,560	132,860	139,510	634,279
	지방세수입	114,809	120,540	126,560	132,860	139,510	634,27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2024. 7. 30. 현재)

연번	시군명	조례제정	담당부서	비고
1	수원시	‘22. 7월	노동정책과	
2	고양시	‘24. 1월	일자리정책과	
3	용인시	‘23. 9월	기업지원과	
4	성남시	‘22. 4월	고용과	
5	부천시	‘23. 12월	일자리정책과	
6	화성시	‘23. 5월	기업지원과	
7	안산시	‘22. 11월	노동일자리과	
8	남양주시	‘23. 7월	일자리정책과	
9	안양시	‘22. 12월	고용노동과	
10	안성시	‘23. 6월	일자리경제과	
11	평택시	‘24. 7월	일자리경제과	
12	시흥시	‘22. 12월	기업지원과	
13	파주시	‘23. 9월	기업지원과	
14	의정부시	‘23. 5월	일자리정책과	
15	김포시	×		
16	광주시	‘22. 11월	일자리경제과	
17	광명시	‘23. 6월	안전총괄과	
18	군포시	‘23. 9월	기업정책과	
19	하남시	‘24. 4월	일자리경제과	
20	오산시	‘22. 12월	일자리정책과	
21	양주시	‘22. 11월	일자리경제과	
22	이천시	‘22. 12월	기업지원과	
23	구리시	‘23. 10월	일자리경제과	
24	포천시	‘24. 7월	일자리경제과	
25	의왕시	‘23. 12월	기업일자리과	
26	여주시	‘24. 4월	일자리경제과	
27	동두천시	‘23. 4월	일자리경제과	
28	과천시	‘22. 12월	지역경제과	
29	양평군	×		
30	가평군	‘23. 5월	일자리정책과	
31	연천군	‘23. 9월	지역경제과	